

『소프트웨어(SW) 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 제안요청서

2016. 06.

● ● ● 차 례 ● ● ●

I. 용역개요	1
1. 용역개요	2
II. 제안요청	3
1. 과업내용	4
2. 산출물 및 보고사항	5
3. 추진일정(안)	6
III. 입찰안내	7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8
2. 기타 유의사항	13
IV. 제안서 작성요령	15
V. 별지서식	18

I . 용역개요

I 용역개요

1. 용역명 : 『소프트웨어(SW) 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2. 용역목적

- '14년 7월 'SW중심사회 선포식' 및 '초·중등 SW교육 의무화' 등 SW교육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SW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미약
-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등 저명 인사들이 SW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영상 제작하여 배포
 - ※ President Obama asks America to learn computer science (<https://youtu.be/6XvmhE1J9PY>)
 - ※ What Most Schools Don't Teach (<https://youtu.be/nKlu9yen5nc>)
- SW중심사회의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SW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
 - 관련 해외 동영상의 경우, 우리나라의 일이 아닌 해외의 일이라는 인식 팽배
- 주요 인사들의 'SW교육 중요성에 관한 인터뷰 동영상' 제작을 통해 미래 세대의 SW교육의 당위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

3.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12월 12일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제작사양

- 제작방식/언어 : Full HD급, Shot 버전/한국어, 영어
- 제작분량 : 국문 및 영문 홍보영상 Full버전(5분 ~ 7분) 각 1편, 국문 및 영문 Short 버전 총 4편 내외 (3분내외)
- 녹음 : 음향효과, 디지털 믹싱

5.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 허용)

6. 추진일정

- '16. 6월 ~ 7월 : 용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16. 7월 : 용역업체 선정평가 및 계약
- '16. 7월 ~ 11월 : 용역 업무 수행 및 중간보고
- '16. 12월 : 최종 산출물 제출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용역예산 : 금 오천만원 (₩5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II. 제안요청

II 제안요청사항

1. 과업내용

가. 제작범위

- 기획, 시나리오 작성, 촬영, 편집, CG(컴퓨터그래픽), 성우더빙, BGM작업 등 동영상 제작·납품에 필요한 일체 작업
- 분량 : 국문 및 영문 홍보영상 Full버전(5분 ~ 7분) 각 1편, 국문 및 영문 Short 버전 총 4편 내외 (3분내외)
- 제작방식 : Full HD촬영(1920×1080) 및 C.G(컴퓨터 그래픽)
- 제작사양 : 기획, 시나리오 작성, HD촬영, 편집, 성우, BGM, CG
 - * 음원, 폰트등 저작권 해결
 - * 제작완료 영상에 대한 재편집에 대한 저작권 해결
- 감성에 자극하는 구성으로 他영상물과 차별화하고, 최신 트렌드 기법을 활용하여 세련된 영상으로 표현
- 나열식 구성을 탈피하고, SW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내용 전개
-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일부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제작
- 제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1년)

나. 제작내용

- 국내 대표 SW기업 대표 인터뷰
- 관련 사업(행사) 영상 소개 등(필요시 별도 촬영)

다. 제작방법

- 제작물 목적에 맞는 명확한 컨셉 표현과 CG, 편집, 녹음 등 세련된 작업 실시
- 사업 단순 나열방식 지양하며, 스토리 중심으로 메시지 전달력 강화
- 2D, 3D를 이용한 모션그래픽, 타이포그래픽 등 디자인이 가미된 기법을 도입하여 다채로운 화면 구성
- SW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 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 구성
- 영상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사전 인터뷰 진행, 사전분석은 전문 기획자와 시놉시스 작가가 구성

라. 활용계획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SW 교육 필요성 홍보
-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와 SW중심사회 홈페이지 (www.software.kr) 게시
- SW 교육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용

2. 산출물 및 보고사항

- 최종 영상 DVD 5개(라벨, 자켓 케이스 포함)
 - * 전체 촬영영상(편집가능) 및 원본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통해 제출
- 사업수행 중 진행상황 및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기획회의를 개최하며 촬영 및 편집 등 각 사업단계에서 중간보고 진행
- 최종 결과보고서(인쇄본 3부 및 CD 1개)

3. 추진일정(안)

- 공고 및 제안서 접수 마감(6월 2주~4주)
 - * 접수마감 : **입찰공고문 확인**
 - *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용역제안서 평가(7월 1주)
- 용역계약 체결(7월 1주)
- 용역 수행(7월 2주 ~)
- 용역추진 결과보고 및 검수평가(12월 1주)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과업완료 후, 산출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는 용역기간 종료 후에도 우리연구소(SPRi)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
- 정부부처,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의 자료 분석 요청 시 적극 협조
- 본 용역의 수행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용역수행 종료와 동시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용역결과물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그 소유권을 가짐

Ⅲ. 입찰안내

Ⅲ 입찰안내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공동/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 허용)

라.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

마.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하지 않음

바.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

- **접수마감 : 2016년 7월 1일(월) 15시까지(마감시각 이후 접수불가)**
- **접수방법 : NIP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cont.nipa.kr>)**
 - 제출된 서류에 증빙기간만료, 도장·서류누락 등의 오류가 있을 경우 입찰 부적격 처리됨

※ 접수마감 기한 경과시 전자계약시스템(온라인 접수)이 자동 중지(연장 불가)되며, 마감시각에 임박하여 접수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 등록 집중으로 인한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를 갖고 접수완료하시기 바람

○ 제출서류 (제안서와 별도 제출)

구 분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입찰참가신청서 (시스템 입력)	필수	해당없음
입찰보증금 (보증증권)	필수	해당없음
가격제안서 (시스템 입력) * 지정된 칸에 입력 시 시스템에서 자동보안처리 됨	필수	해당없음
가격산출세부내역 1부 (별지서식, 파일첨부) * 지정된 칸에 등록 시 시스템에서 자동보안처리 됨	필수	해당없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해당없음 문구 공파일로 대체	필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증명서 하단의 유효기간 확인 후 기간내 서류로 제출	필수	
확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시스템 확인)	필수	해당없음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중소기업청 발행) * 비영리법인은 허가증 등으로 대체	필수	
유사용역(사업) 이행실적증명서 1부 이상 (별지서식)	해당 시 선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별지서식)	해당 시 필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시 협정서 및 합의각서에 날인된 도장을 확인 할수 있도록 제출	해당 시 필수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인증서, 장애인표준사업장/사회적협동조합 확인서 (해당시)	해당 시 선택	
재무제표(최근 3년)	필수	
제안서 및 제안발표 자료 각 1부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	필수	해당없음

주 의 사 항

- ※ 모든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http://kont.nipa.kr>) 파일로 접수(마감전 완료되어야 함)
- ※ 별도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거나, 도장을 스캔하여 파일에 삽입하여 제출
-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구성원의 서류를 총괄하여 제출
- ※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등록
- ※ 증명기간만료, 서류누락 등의 오류시 입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사.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단,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됨)

※ 보증서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7월 1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7월 2일) 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아. 기술(제안서)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

- 종합 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 + 입찰가격평가(20%)
-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기획력	○ 기관 홍보영상에 대한 이해도 ○ 명확한 컨셉 설정	10
	구성력	○ 시나리오 구성의 짜임새 ○ 카피의 설득력 및 공감도	10
	창의력	○ 아이디어 독창성 ○ 접근시각 및 표현방식의 참신함	10
	설득력	○ 영상물의 정보전달력 및 흥미와 감동요소 ○ 시선의 주목 및 집중도	20
	수행능력	○ 세련된 비주얼 표현력 ○ 최신 기술의 적용 정도 ○ 실적 영상 수준 ○ 인력 및 인프라	25
	사업실적	○ 최근 2년 이내 영상물 제작 실적(실적 증명원 등) - 1건(2점), 2건(3점), 3건(4점), 4건 이상(5점)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별도 평점산식 적용	20
합 계			100

○ 기술(제안서)평가 점수 산정방식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방식은 우리 원 지침을 따름 (계약자선정평가지침)
-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사업담당자가 개별 통보
-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상단 기술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 내용 위주로 작성 (자유양식, 발표 20분 / 질의응답 20분)

○ 제안발표 자료는 발표전일까지 사업담당자(이호 선임연구원)에게 이메일로 제출(leeho32@spri.kr, 031-739-7361)

○ 제안발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입찰가격점수 산정방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right) + \left[2 \times \left(\frac{\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당해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right)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단, SW사업일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기술평가배점 총합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차.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가격협상 : 예정가격이하 가격협상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카.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원이 정하는 제안요청(안내)서 및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보증서 등)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입찰에 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 참여한 경우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파.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하.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안내)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입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사업담당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담당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사업 수행 완료 후 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우리 원의 다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우리 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 시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마감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기타사항

- 면세사업자는 사업예산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내로 가격제안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및 우리 원 계약운영요령에 따름

라. 안내 및 문의

- 사업관련문의 : 인재정책 연구팀 이 호 선임연구원 (031-739-7361)
- 입찰관련문의 : 행정·지원팀 허혜정 대리 (031-739-8806)
-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IV. 제안서 작성요령

IV 제안서 작성안내

□ 제안서의 효력

- 가. 우리 원이 필요시 제안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 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라.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 작성기준

-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목차 및 양식에 의해 작성할 것.
 - ※ 1. 번호체계는 「I」, 「1」, 「가」, 「o」, 「-」, 「·」 순으로 기입
 - 2.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나.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 제안서는 HWP로 작성, 제안발표자료는 PPT로 작성,
- 다. 제안서 본문 내용은 40페이지, 제안발표 자료는 20페이지 내외로 작성
- 라.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마. 제안서는 한글(국어)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아.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 항목	작성 요령	비 고
I.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사 일반 사항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현황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별지서식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전체적인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 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주요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제시(유사시설 관리 운영 실적)	별지서식 별지서식
III. 사업 수행 부문		
1. 개요	본 사업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추진목표 및 전략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 제시	
3. 주요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기술	
4. 과제별 추진방안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방안 및 계획제시	
IV. 사업관리		
1. 추진일정 계획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2.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중 보고 및 검토계획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을 제시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작업 단위별 수행 인력의 이력사항	별지서식
5.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납품 후 사후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V. 기타 사항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추가 지원가능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	

V. 별지서식

요약 재무현황 및 매출액(최근 3개년)

(단위: 천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산			
자기 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액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OO 부문		
	계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률			

- ※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 공적 증명이 가능한 연도별 재무제표 별도 제출

주요사업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0000. 0. 0 ~ 0000. 0. 0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입찰과 관련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참여인력(상주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역할	총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		%
	실 참여기간	실 참여기간 중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일-년월일)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0000.0.0 ~ 0000.0.0			

- 본 임찰의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참여인력의 참여사항은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과, 실제 사업 참여기간 중 참여율을 구분하여 기재 (예시) 총 사업기간 5개월 중, 참여인력이 2개월간 100% 투입되는 경우
 - 총 사업기간 란에 5개월 또는 00년 0월~ 00년 0월로 기입,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 란에 40% 기입
 - 총 사업기간 란에 2개월 또는 00년 0월~ 00년 0월로 기입, 총 사업기간 중 참여율 란에 100% 기입

※ 공동수급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인)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용역이행실적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고
증명서발급처	위 사실을 증명함				
	2016년 월 일				
	기관명	(인)			
	주소				
발급부서		담당자	(인)	전화번호	

※ 반드시 발급처의 증명확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산출근거표 (엑셀 등 기타양식 활용가능)

가. 총괄

(단위 : 원)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1. 인 건 비			
2. 경 비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X 5% 이내
4. 이 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5. 순 원 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6. 부가가치세			(순원가) X 10%
합 계		100%	(순원가+부가가치세)

※ 면세기관의 경우, 상기 제안금액에서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외 및 조정하여 계약체결 예정

나. 비목별 내역

1) 인건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인원)	No	직 급	성 명	지급단가 (A)	참여율 (%) (B)	개월수 (C)	합 계 (A×B×C)	주요경력 (최근학력 및 주요경력)
내부인건비 (명)	1	책임연구원						
	2	연구원						
	3	연구보조원						
	4	보조원						
	...							
외부인건비 (명)	5							
	6							
	...							
합 계								

※ 내부인건비 : 정규직(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 외부인건비 : 비정규직(유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내역 작성

2) 경비 : 원

(단위 : 원)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구성비(%)	비 고
국내여비				
유인물비				결과물, 문헌자료 등
전산처리비				
용역재료비				소모품류 등
회의비	전문가자문			
	자료수집비			
	...			
임차료				
교통통신비				전화, 회선, 연구원교통비 등
...				
합 계				

※ 필요 비목만 표기, 비목 추가/수정 가능

※ 비목별로 산출내역 상세히 작성할 것

※ 정부의 녹색환경조성 방침에 따라 인쇄물은 녹색용지로 제작 (www.greenproduct.go.kr 참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입찰건명 기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 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 9 호 서식) 제안서와 별도 제출, 지정된 칸에 등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이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 (인)

○○○ (인)

○○○ (인)

(별지 제 10 호 서식) 제안서와 별도 제출, 지정된 칸에 등록

합 의 각 서

입찰 공고 번호	NIPA 제 15 - 호	입찰 일자	2016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건명 기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 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등록 번호

(인)